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78 발의연월일: 2022. 11. 30.

발 의 자: 허은아·강기윤·배준영

유의동 • 이용호 • 이주환

이태규 • 최영희 • 최춘식

태영호 · 하영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번호안내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이 법정 의무로 신설된 것이 2004년으로서 현재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번호를 안내받는 이용자는 사실상 거의 없고, 관공서나 은행 및 병원 등 생활전화번호 역시대부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어 번호안내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임. 특히,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이에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전기통신번호"를 "전기통신번호(「전파법」에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①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	-전기통신번호(「전파법」에 따
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책자·인	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
(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	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
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u>한다)</u>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	
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